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김동길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I.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1. 알 권리의 개념

위긴즈(James R. Wiggins)에 의하면 국민의 알 권리란 ① 정보를 입수하는 권리, ② 사전억제나 제한없이 인쇄 또는 방송하는 권리, ③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인쇄 또는 방송하는 권리, ④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권리, ⑤ 위헌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정부나 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시민에 의하여 방해됨이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권리의 다섯가지 영역을 포괄한다.¹⁾

이렇듯 알 권리는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사상표현의 자유, 정보전달의 자유,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등을 모두 포함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로 축소개념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오늘날 많은 서구형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력하게 주장되게 된 것은 특히 전쟁중에 있어왔던 언론통제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 2 차대전후에 자유주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알 권리 운동의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²⁾

서독의 기본법에서 「알권리」 조항을 신설한 것 또한 나치스시대의 정보제한에 대한 반성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듯이 알 권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각국마다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³⁾

첫째로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수반하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력한 매스 미디어가 집중화되어 게이트 키퍼인 언론기관과 수용자인 일반국민이 현저하게 분리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매스 미디어가 보도하는 정보내용에 대해 반론권 내지 악세스권을 일반국민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게 되었으며, 법원판례들도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갖는 알 권리의 의의를 강조하게 되었다.

알 권리의 개념이 전후에 특히 강력하게 주장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로는 국가비밀사항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제 2 차 대전 후에 많은 나라에서 국가의 기능이 증대되고 행정권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방대한 양의 정보가 생기게 되나, 전후 국제사회간에 냉전이 심해지고 국제간의 긴장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상 기밀영역이 확대되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이 날로 심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공사항에 관한 많은 정보를 받고 얻음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민주적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가 곧 국민의 알 권리의 운동으로 연결되고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적 보장과 입법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알 권리」의 법적 성격

국민의 알 권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정신적 활동의 원동력으로서 처음 대두되어 민주정치의 본질인 자기통치의 가장 기본적 요소로 발전되게 되었다. 인간형성에 있어 「안다는 것」은 출발점이 되므로 알 권리는 인간의 자기 실현에 필요불가결하다. 또 각자의 지적 능력이 가능한 한 개발되어야 비로소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가하는 민주적 정치과정 즉 국민의 자기통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성적인 자기실현의 목표와 자기통치의 가치와의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에머슨(T. Emerson)은 자유로운 표현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① 개인의 자기실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써, ②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써, ③ 사회성원에 의한 사회적 정치적인 결단 형성에의 참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써, 그리고 ④ 사회의 안정과 변혁과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써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사회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네개의 가치를 들고 있다.⁴⁾ 이 중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③의 자기통치의 가치는 ①의 자기실현의 가치로 뒷받침되고, 이 두가지가 함께 알 권리를 전제로 해서 전개된다는 관계에 있다. 그런 뜻에서 알 권리는 모든 기본적 인권의 전제가 되는 것이며,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 속에 내재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알 권리는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권리로서 알 권리를 방해하는 권력작용의 배제를 요구하는 자유권적 성격이 강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알 권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로서 정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회권적 성격으로 발전되기에 이르렀다.⁵⁾

따라서 이 권리는 표현행위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유권적 성격의 효과와 함께 국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회권적 효과가 복합된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효력을 함께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알 권리에 관해서 직접적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알 권리가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론이 있었으나, 제 5 공화국헌법이 공포되면서 그 제 9 조에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알 권리를 헌법상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⁶⁾ 그러나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정보공개법은 제정되지 않고, 언론기본법이 「모든 국민은...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제 2 조제 1 항)고 규정하고 언론의 정보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스웨덴이 모든 국민에게 정보청구권을 인정한 데 반하여 언론기관에게만 정보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국민의 알 권리에는 먼저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 정보의 유통이라 함은 정보수집@정보제공(전반)→정보수령 등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에서 방해받거나 저지당해서는 안된다. 방해라는 의미는 직접 방해행위 뿐만 아니라 간접 규제까지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는 정보수집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데 이와같은 내용에는 국정의 정보공개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무엇보다도 광범한 공공사항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받고 얻음으로써 올바른 정치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 권을 행사하며,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게 된다. 이것이 곧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참가하는 것이 되며 국민의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성격을 띠게 된다. 국민의 알 권리가 국가권리의 부작위에 대한 청구권에만 머물지 않고 좀더 적극적인 정보공개 내지 제공을 요구하는 사회권적 권리로서 발전해나가게 된다는 것은 이런 성격에서 나오는 말이다.

3. 알 권리의 한계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 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며, 국민이 향유하는 여러가지 기본권 중의 하나이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여러가지 사회적 이익 중의 하나이다. 알 권리가 다른 기본권이나 사회적 이익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양자를 비교 형량해서, 알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같은 교양의 기준은 알 권리의 한계가 된다.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와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익은 개인적, 사회적 및 국가적 법익으로 3 분된다. 명예훼손, 사생활권의 침해, 저작권의 침해 등은 개인적 법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외설이나 그밖에 사회적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과 국가안전보장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도 알 권리의 행사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다.

무엇보다 알 권리는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인적 권리와 충돌된다.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가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가면서까지 또는 타인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는 뜻이 아님은 자명하다. 매스 미디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봉사하는데 필요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까지도 보호한다는 이율배반적인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것은 성(성)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문제를 가져다 준다. 성표현은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데 비해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표현은 많은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제 12 조는 「누구나 그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 명예와 신용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은 모두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제 5 공화국 헌법에서도 그 제 20 조 제 2 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 속에 사생활의 권리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래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대하여 그 내용성격을 고찰하며, 특히 정보화사회에서의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문제를 다루고, 프라이버시권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프라이버시의 권리

1.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고전적 정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이해되고 있다. 이 발상은 줄리(Thomas M. Cooley)가 「Treatise on the Law of Torts」에서 1888년에 서술한데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2년 후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가 「Harvard Law Review」에서 이러한 권리의 특수사례로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제창하게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⁷⁾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언론기관들의 상업주의화, 그리고 정보화사회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의 개념⁸⁾으로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즉 소극적·수동적 개념인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사(사사)가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않도록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는 생각으로부터 발전되어, 적극적·능동적인 개념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능동적인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사회적 관계 하에서 자기의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과 커뮤니케이트하는가를 결정하는 권리⁹⁾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으로 승인된 자유 내지 기능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개인은 타인에 의하여, ① 자기의 아이디어, 성명, 초상, 기타 신분의 징표를 취득, 이용하는 범위, ② 자기 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 공개하는 범위, ③ 자기의 생활영역 및 자기가 선택한 활동을 물리적으로 침범하는 범위 등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타인과의 상호의존관계는 더욱 고도화되고 개개인의 신상관계정보의 노출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의 정보화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의 적극적인 개념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라든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전을 방해 받지 아니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책임하에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권리¹¹⁾로 파악함이 필요할 것이다.

2. 프라이버시권의 연혁

프라이버시권이란 원래 자연법으로부터 유추된 권리의 하나로서, 그 보호가 중요시되어 왔다. 즉 프라이버시권은 자연법에 의하여 인간에게는 그의 삶과 신체·건강·명성 등을 합법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법의 의무조항이 아닌 한 구속이나 금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는 자연인의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¹²⁾

그러나 현대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공개로부터의 자유권¹³⁾이라고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인격권의 일부로서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초기에는 인격권의 테두리속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단지 개별적 인격권으로 보호되고 인정되었고, 불법행위법상의 소송으로 명예훼손의 법리, 재산권 침해의 법리,

묵시적 계약 또는 신뢰위반의 이른 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거나 사법상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

이와같이 인접한 여러 법리의 연관성 속에서 보호되어 오던 프라이버시권이 1890년 Warren과 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란 논문이 나온 이후, 점차 새로운 개념적 발달을 보아 독자적인 권리로서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이러한 독자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은 미국을 비롯하여 판례법상으로 개념적 발달을 보아 하나의 법률적 권리로 표면화되기에 이르렀고¹⁴⁾ 영미법 계통으로 확산,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륙법에서도 인격권의 하나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동양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1960, 70년대 이후에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에 근거를 둔 판례가 나타나면서, 점차적으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일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도 제 12조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그의 사생활(Privacy), 가족, 가정 및 통신에 대하여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인간은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966년 12월 16일 UN이 채택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 17조에도 「누구든지 그 사사·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타의적·불법적 간섭이나 그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간섭이나 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 프라이버시권이 국제적 헌장 또는 규약으로 보호·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최근의 경향을 보면 드물기는 하나 몇몇 국가에서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제 5공화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제 16조)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경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근래에 들어와 정보화사회라는 사회적 특징을 반영하여 특별법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경향이 새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서독의 1979년 「데이타보호법」(Datenschutzgesetz), 프랑스의 1978년 「정보처리·정보축적·자유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3.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을 논하자면 그것은 자연인의 권리이고, 인격권의 하나이며, 또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리적 권리라는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첫째로 자연인의 권리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¹⁵⁾ 이 권리는 인격적 가치가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고 규제함을 법익으로 하는 까닭에 원칙적으로 살아 있는 자연인만이 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죽은 사람은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권의 일종이다.¹⁶⁾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일종의 인격권으로서, 사적사항을 침해 받아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규제받는데 의의가 있다. 비록 손해배상의 형식을 취하는 판례일지라도 그것의 본질은 정신적 고통을 규제하는 것이며, 그 법익의 중심 또는 인격권적 이익에 있는 것이다.

세째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다.¹⁷⁾ 그것은 사적 사항의 공개나 인격적 징표를 훼손 또는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생활의 영위 및 사생활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특정인의 고유한 사항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다.

4.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프라이버시권은 침해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요건과 침해유형의 두 측면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가. 성립요건

프라이버시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¹⁸⁾ 첫째, 공표된 내용이 사생활의 사실 또는 사생활의 사실처럼 받아 들여질 우려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됨으로써 심리적 부담이나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세째 일반인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개인이 실제적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졌어야 한다. 네째, 공개된 사적 사항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표된 사상의 진실성이나 공개자의 악의의 결여는 항변이 될 수 없으나 당해 당사자의 문서에 의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 가 소멸된다.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살피건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명예훼손은 양자가 인격적인, 정신적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동일한 행위가 동시에 양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쉬운 점도 있다 하겠으나, 양자는 성립요건과 면책사유 등에 있어서 그 성격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¹⁹⁾

나. 침해유형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인의 또 하나는 그 침해유형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 프로서(William L. Prosser)는 다음의 네 가지 침해유형을 들고 있다.²⁰⁾ 첫째 사생활 또는 사적 사항의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 본인이 비밀로 붙여두고 싶어하는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이 언론 매체에 의해 그대로 공개되어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사사에 관한 왜곡적인 공표(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 오해를 함께 하는 공표란 허구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세인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사실과 다르게 알도록 하는 행위의 유형이다 셋째 사사의 영리적 사용(Appropriation of Name or Likeness) : 개인의 성명·초상·경력 등 본인에게 고유한 속성, 즉 인격적 징표를 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여 상업적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넷째, 사생활 또는 사사에의 침입(Intrusion upon Solitude or Seclusion) :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개인의 평온 한 사생활이 적극적으로 침입·간섭받거나 소극적으로 감시 도청 또는 촬영되는 행위 등에 의하여 불안과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일부 논자들은 Prosser의 위의 사분법의 유용성에 관해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²¹⁾ 즉 Dionisopoulos와 Ducat은 사적 사항의 공표, 오인을 남게 하는 표현, 성명, 초상의 남용의 3 유형만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생활의 침입, 사적 사항의 공표, 오인을 남게 하는 표현만이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Zuckman과 Gaynes는 사적사항의 공표와 오인을 남게 하는 표현만이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Wacks는 오인을 남는 공표와 초상, 성명의 남용을 특히 관련짓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부 주의회 법원들이 Prosser의 위의 4분법을 정확한 기술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외의 나라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²²⁾

5.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근거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근거로서 불법행위법상의 근거 -즉 재산권적 근거, 명예훼손의 법리·묵시적 계약 또는 신뢰위반의 이론-와, 제정 법상의 근거-즉 입법에 의한 권리 확립·헌법적 근거·시민법상의 근거·자연법적 근거 등-를 들고 있다.²³⁾

구체적으로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회환경의 발전 변화에 따라 1974년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해서 그 법적 근거를 더욱 굳게 하고 있다.

서독의 경우에는 기본법에 명문으로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기본법 제 2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인격권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헌법 제 132 조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란 개념 속에 이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호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종래 기본적 인권으로서 각종의 자유권조항으로부터 유추하여 직접 · 간접으로 그 권리를 보호해 왔었다. 그러다가 현행 제 5 공화국 헌법에 이르러 그 제 16 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보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에는 한정적 해석론과 확대해석론의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요컨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은 현행 헌법 제 16 조 뿐만이 아니라, 제 9 조(존엄 · 가치 · 행복추구권), 제 20 조 제 2 항(언론·출판에 대한 명예·권리 등 침해금지), 제 34 조 제 1 항(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존엄과 평등) 제 11 조(신체의 자유) 제 1 항, 제 3 항, 제 6 항을, 제 17 조(통신의 자유), 제 15 조(주거의 자유) 등을 근거로 하여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헌법적인 근거 외에도 민법상의 보호근거와 형법상의 보호근거에 신설된 언론기본법까지도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근거로 들 수 있다. 즉 민법 제 750 조의 불법행위의 내용에 대한 규정, 동 제 751 조의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과 동 제 756 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 규정, 형법 제 307 조 내지 제 309 조의 명예훼손관계 조항규정, 그리고 언론기본법의 제 3 조 제 3 항의 언론의 공적 책임 조항 등이 그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의 법적 근거가 프라이버시권의 근거로 주장되지만, 그 중에서도 헌법 제 16 조의 규정이 그 기본을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입법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허실이 지적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제정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할 프라이버시권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사회의 공존을 위하여 기타의 법익과 충돌되는 경우 이 권리가 제한받아야 한다는 한계에 직적할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는 그 침해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되고 심화된 데에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의 제반요건, 예컨대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욕구와 이를 충족하려는 개인의 사적 정보의 상품화,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의 취재욕과 취재방법의 고도의 기술화 등으로 말미암아 침범당할 우려가 많은 프라이버시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취지는 개인의 사생활권, 비밀권·평온권·행복추구권 등의 무형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새로운 인간문제로서 권리의식이 발달되고 권리분화가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 그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사회에서 사회전체의 자유의 균형있는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권도 그 보호와 함께 다른 자유 또는 권리와 한계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 하에 프라이버시권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양자가 상충되는 경우 그 중의 어느 쪽을 우선시킬 것인가를 결정짓는 판단 기준으로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권리 포기의 이론, 공익의 이론, 공적 존재론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권리포기의 이론 : 권리의 포기란 일정한 사정하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²⁴⁾ 이런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존재하지 않고 이를 공개해도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공익의 이론 : 일반인의 정당한 관심사, 즉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써, 보도적·교육적·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우선하며 침해의 면책사유가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실 또는 진실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며 허위나 사회의 품위를 손상시켜 국민에게 해악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는 공익성이 상실되고, 알 권리의 대상, 정당한 관심사의 내용에 따라 공익의 비중이 달라지며 당사자의 동의와 표현행위·공익성의 종류·보도매체의 종류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생긴다는 한계를 지닌다.²⁵⁾

세째, 공적 존재론 : 공적 존재 또는 공적 인물과 같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의 한계를 정한다는 이론²⁶⁾인데, 배우나 가수 또는 정치가나 예술가 등의 소위 자발적 유명인²⁷⁾과 타의적 민중의 관심대상 즉 범인이나 그 가족·피의자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유명인은 자기의 사생활을 공중에게 바쳤다고 보아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거나 또는 유명인의 사생활은 이미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는 논거에서 주장되는 이론이다.

요컨대 프라이버시권은 공적 인물 또는 공적 존재의 경우에는 제한 받게 되며, 뉴스나 보도적, 계몽적, 교육적 내용의 유포 중에 그 권리는 약화되고 공익은 개인의 가치에 우선하며 또 국민의 알 권리가 프라이버시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프라이버시권은 국가안전보장과 같은 특별한 국가적 상황에 의거하여(헌법 제 35 조 제 2 항)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입법행정 사법기관 등의 공권력과의 관계에서나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침해의 경우에 제한받게 된다.

위에서 든 이익교량의 원칙 이론 등은 각기 제한점을 지니고 있고, 프라이버시권 자체의 다양성 때문에 기계적인 적용이 불가능해서 사례별로 신축성있는 운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7.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상충

과거와 현재를 통해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의 초점을 이루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나 표현의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이 상충을 일으켰을 경우에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며 더욱이 바른 기본권에 비하여 법리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이로써 곧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다 우월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현행헌법은 특별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고, 또 헌법에 명문을 두고 있지 않는 많은 나라에 있어서도 해석상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각도를 바꾸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양자간의 우열의 차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두 권리는 각기 현대사회에 서의 필요불가결한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 반면에 그 성질이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나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은 본시 공중의 시선으로부터 개인의 사사로운 내밀의 측면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을 간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권리인데 반하여, 표현의 자유는 사실을 공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권력을 감시하도록 하는 기본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러나라에서의 판례의 일반적 경향을 보면 결국 하나하나의 경우마다 양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다만 구체화된 몇 몇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정도임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공익의 이론이나 공적 존재이론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권의 한계에 관한 제이론들이 그 예이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 잊어서는 안될 일은 첫째로 언론은 수 많은 권리와 이익 가운데에서 개인권의 보호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로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속에서 개인권의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이 여러가지 법익 가운데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특히 우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론이 본질적으로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물론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독자와 시청자 등의 대중을 위해 먼저 존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봉사하게 된다.²⁸⁾ 따라서 독자나 시청자를 떠난 언론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인 차원에서 존재가치가 희박해진다는 뜻이다.

언론은 국민 개개인을 독자나 시청자 단위로 인식하고 또한 그들에 의해서 비로소 언론의 존재 가치가 부여되는 국민적 기관으로서, 점차 정보화하고 대중화하며 조직화하는 현대사회 속에 보호되지 않고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개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해 기능하고 역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본질상 상충할 수 밖에 없는 소지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보호해 가면서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야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의 비교 교량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의 입증이 없는 한, 원칙론으로서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1.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산물이며,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현대적 인권개념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이 권리는 특히 컴퓨터의 출현과 발달로 결과된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새로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는 지식사회이며 관리사회이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에서는 가시적인 유형물의 물량적 풍부 대신에 불가시적인 무형의 정보 및 정보를 상호결합하고 응용하는 방법이 인간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오게 하고, 지식산업 또는 정보산업이 활기를 띠며 경제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의 양, 정보산업의 발달정도, 통신주체의 수준, 대중매체의 특성이나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그 보급정도 등이 정보화사회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²⁹⁾ 여기서 정보산업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 제공하는 산업으로 기존의 매스미디어산업이나 통신산업 분야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바로 이점에서 정보화사회의 언론 즉 방송 신문 출판·잡지 등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보화사회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정보량의 압도적 증대, 정보의 다양화, 사실세계를 반영한 모사적 세계의 인간환경, 그리고 사회구조의 시스템화 등을 든다.³⁰⁾

또 정보화사회의 문제점으로서 ① 정보공개와 정보의 병리현상, ② 의사환경의 확대, ③ 정보통제와 정보소외, ④ 정보의 표준화와 획일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³¹⁾

근래에 이르러 컴퓨터 기술과 함께 각종 감시기술³²⁾ (야간감시장치, 레이저광선, 거짓말탐

지기, 성격검사, 독심술, 뇌파측정, 전자장치 등)의 비약적 발달은 여러 국가기관이나 기업, 그밖에 사적 조사기관에 의해 개인에 관한 정보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가는 현상을 낳았다.

거기에 정보화사회로의 추진력이 된 컴퓨터는 무한한 자료처리, 저장, 인출과 특정목적에 따른 정보의 편집응용 등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와 함께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정보의 집중관리체제인 자료은행 (Data Bank)의 형성으로 개인에 관한 각종 다양한 정보의 수집·처리·제공이 더욱 용이해지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각종의 복지혜택과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양각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을 알 수는 없으며 그것이 누구에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확실히 자기자신에 관한 정확한 내용인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산업조직의 복잡화, 관료조직의 거대화, 사회과학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의 경향에 따라 우리는 이제까지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산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 과학의 진보를 위해, 효과적인 사회를 위해 자기의 정보를 거대한 흐름속에 계속 끌어 넣고 있다.

예컨대 출생, 결혼력, 학업성적, 국세조사자료, 군복무기록, 해외여행, 공사(공사)의 직무상기록, 납세보고서, 사회보장자료, 재산대장, 은행거래장부, 각종 허가신청서, 신용거래, 운전면허, 직업력, 범죄력, 건강진단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신용거래카드(credit card)의 출현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고, 누구와 어디서 여행하고 오락을 즐겼는지까지도 기록에 남게 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컴퓨터피어 시스템을 이루게 된다는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고도의 위험을 가져온다는 비관론도 나오는 등 대립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요컨대 자료은행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³³⁾으로는, ① 자신에 관한 기록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존·이용되는가를 알지 못함이 개인에게 불만과 위험을 안겨주고, ② 틀린 정보나 오래된 불완전한 기록의 보존으로 인해 정보이용자가 일개인에 대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려가 있고, ③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의 동의하에 수집된 정보가 기관 상호간에 교환되거나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에 정보의 유용이나 목적 외 사용의 염려가 있으며, ④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은 그것이 효율적 일수록 더욱 안전상의 취약점이 문제되며, 특히 전자기기의 원격조작에 의해 터미널로부터도 기록의 입력이나 인출이 가능한 상해에서는 정보의 도용이나 악의적 이용의 위험부담율이 커진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편리하고 신속하며 용이하다는 장점보다는 중앙집중처리된 정보의 일괄적인 처리로 알 권리가 두절되고, 인간은 관리사회의 단순한 관리대상³⁴⁾이 되어 인간부재, 인간소외, 소수 엘리트의 대중 조작, 기계화, 체제화에 의한 인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말살³⁵⁾이란 위험성이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더욱 심각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정보화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은 개별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적극성과 능동성을 띠게 되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협의보다 광의적으로 인격적 이익의 총체 내지 자기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풀이되게 되었다.

여기서 주로 미국의 판례로부터 광의적인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① 결사내에서의 프라이버시, ② 익명으로 전단을 배포할 수 있는 프라이러시, ③ 정치신념에 속하는 프라이버시, ④신체의 불가침에 관한 프라이버시, ⑤ 결혼생활에서의 부부의 프라이버시, ⑥ 음란문서의 사적(사적) 소유에 대한 프라이버시, ⑦ 부당한 수색·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 ⑧ 행정조사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권리, ⑨ 도청당하지 않을 프라이러시, ⑩ 싫은 정보를 받지 않을 권리, ⑩ 자기의 기록문서철의 공개요구와 정정요구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³⁶⁾

이 밖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데이터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하며 또한 불복 신청권 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정보화사회에서의 언론

언론의 자유는 정보를 추구하고 입수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고 공표할 권리 등 보도의 자유와 공중의 알 권리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³⁷⁾

바로 이 점에서 언론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제공하는 정보산업의 일부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언론은 컴퓨터에 의한 자료은행의 네트워크에 가담하여 다종다양한 정보를 자유 자재로 꺼내어 사용하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따라 또는 그 의도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할 수도 있고 대중의 스타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언론은 정보를 점유하는 자로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극히 일부 밖에는 대중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있고, 역으로 알 권리를 내세워 일반인, 특히 유명인 등에 관한 사적 정보를 상세히 수집·처리·제공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또 정보관리 독점층과 결합하여 소비정보의 홍수와 관리정보의 빈곤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대중을 문맹화하고 불리한 정보의 은폐, 유리한 정보의 유출 등으로 정보 및 여론조작을 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때 컴퓨터를 조작·운영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양심에의 기대와 더불어,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은 보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정보의 민주화라는 본질적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중의 편에 서서 중앙집중화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정보사회의 부당한 정보질서를 지적하면서 컴퓨터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환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컴퓨터에 의한 신속·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힘입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언론은 컴퓨터 시스템이 지닌 장단점을 효율적인 운영과 개인적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앞서 본바와 같이 프로서(Pressor) 교수의 4가지 침해유형-즉 ① 사생활의 침입, ② 사적인 사항의 공개, ③ 영리적 이용, ④ 왜곡된 공표-에 따라서 더욱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언론은 공적책임의 다함으로써 언론이 공중의 신뢰를 더욱 굳게 바쳐야 할 것이다.

박현심의 연구조사³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및 그 침해와 보호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보호의 필요성과 아울러 보호대책-입법을 통한 보호, 국민운동의 전개, 윤리교육의 강화, 각 기관의 자율적 규제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있다.

또한 박현심의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결과가 밝혀졌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 ③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되어야 한다.
- ④ 각기관 및 단체가 수집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 ⑤ 각기관 및 단체가 수집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에 대한 정정을 해당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⑥ 영화검열이나 방송심의제도와 같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감시제도를 개설해야 한다.
- ⑦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했을 때의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⑧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자에게는 형벌을 가한다.

위의 조사에서 이 8개항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정도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84.98%이었고, 최소는 ⑥항의 65.4%, 최고는 ⑦항의 94.7%이었다.

우리나라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국민운동의 전개와 윤리교육의 강화, 언론기관의 자율적 규제, 그리고 입법을 통한 보호 등 여러 방향의 보호가 모색되어질 수 있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매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의 신장이나 언론자유외의 확보를 위하는 틀에서도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신문윤리 실천요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또는 평론해서는 안되며, 공공의 이익과 대중의 호기심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James R. Wiggins (1964), Freedom or Secrecy(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p.3-4.

2) 千葉雄次郎(1972), 「알 권리」(동경 동경대학 출판회), p. 187.

3) 芦部信喜(1974), "알 권리 이론", 「현대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제 3 권(언론의 자유) 동경 : 동경대학출판회), p.5.

4) T, Emerson(1963),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Yale Law Journal」, Vol.72, p.877.

5) 안용교(1974),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7.

6) 김철수(1981),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 월간조선, 제 2 권, 제 8 호(1981 년 8 월), p.56.

7) Samuel D. Warren and Louis D. brandeis(1980),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

8) 김철수(1979), "Privacy 의 권리": 「고시연구」 (1979 년 6 월), p.61.

9) A. F. Westin(1967), Privacy and Freedom(New York : Atheneum). p.7.

- 10) William M. Beane(1966), "The Right to Privacy and American Law",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31, p.60.
- 11) 권영성(1983), "사생활권의 의의와 역사적 변천", 「언론중재」, 통권 7 호, pp.7-8.
- 12) William F Swindler (1955), 「Problems of Law in Journalism」 (New York : Macmillan), p.251.
- 13) 김철수(1979), op. cit.,p.61.
- 14) Don R. Pember (1977) , Mass Media Law」 (Dubuque, Iowa : Wm C. Brown Co. Pub.), p.169.
- 15) 변재옥(1979),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pp.37-40;권영성 (1983a), op.cit.,p.9. IS)
- 16) 권영성(1983b), 「신고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 p.338.
- 17) 변재옥(1979), op. cit. ,p.25.
- 18) 안용교(1980), "프라이버시권", 「월간 고시」, 1980 년 5 월, pp.47-62.
- 19) 김동철(1983),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귀속", 「언론중재」, 통권 6 호 (1983 년,봄) , p.26.
- 20) William L. Prosser (1960) , "Privacy", 「California Law Review」, Vol,48, pp.383-423.
- 21) 윤명선(1983), "사생활권의 침해유형과 구제방법 : 영미법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통권 7 호(1983 년, 여름). p.25.
- 22) Ibid., pp.25-26.
- 23) 김철수(1979), op. cit.,pp.21-22, p.63.

- 24) 권영대(1983b), *op. cit.*...p.343,
- 25) 변재옥(1979), *op. cit.*, pp. 153-158.
- 26) 권영성(1983b), *op. cit.*,p.344.
- 27) Pressor (1960) , *op. cit.*, p.410.
- 28) 서정우(1983), "언론보도와 사생활권의 침해", 「언론중재」, 통권 제 7 호 (1983 년, 여름), p.20.
- 29) 변재옥 (1979). *op. cit.*, p.168.
- 30) 고하수(편) (1972), 「정보화사회론」 (동경: 학문사), p.25.
- 31) *Ibid*, p.33.
- 32) 변재옥 (1979). *op. cit.*, pp. 173-178.
- 33) 양건(1981),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 「월간 조선」, 제 2 권, 제 8 호(1981 년 8 월), pp. 102-112.
- 34) 진아팔중(1981), "프라이버시 보호의 운용과 과제", 「쥬리스토」, 제 742 호(1981 년 6 월), 동경 : 유비각, pp.221-222.
- 35) *Ibid*, p.223.
- 36) 김철수(1979) , p.65:변재옥 (1979), pp.94-102.
- 37) Sean MacBride (1981) , "The Most Important of Human Rights", 「IPI Report」, Vol,30, No.7 (October, 1981), pp. 11-12.
- 38) 박현심(1984),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보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려대학교 경제과, 미국 인디애너대학교 대학원
- 저술 : 「TV 교육의 이론과 실제」 외 논문 다수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